

총포 · 모의총포 · 도검류 등
위해물품은 국내 반입이
금지 되어 있습니다.



총포 · 모의총포 · 도검류 등 위해물품 반입 금지



위해물품이란?

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· 분사기 · 전자총격기 · 석궁 · 모의
총포 등 (법 제2조)

※ 근거 : 총포 · 도검 · 화약류등안전관리법

규제 대상

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· 분사기 · 전자총격기 ·
석궁 등 의 제조 · 거래 · 소지 · 사용 · 수출입

1. 총포



① (정의) 권총 · 소총 · 기관총 · 포 · 엽총, 금속성 탄알 및
가스 발사 총포, 공기총



권총



소총



공기총



어획소총



(화약식)타정총



3D총

① (부품) 노리쇠, 방아틀뭉치, 탄알, 소음기, 조준경



총신



소음기



조준경

2. 모의총포



① (정의)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
가능성이 높은 것

① 모의총포의 기준

-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
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
- 인명 ·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



살상이 가능한 모의총포(반입금지)



실제 총과 아주 비슷한 모의총(반입금지)

총포 · 모의총포 · 도검류 등 위해물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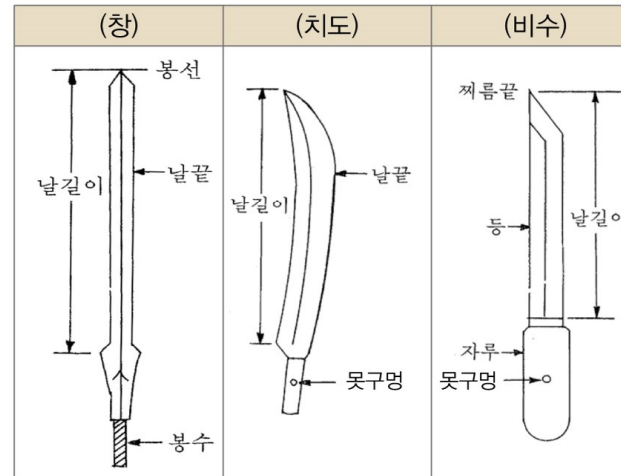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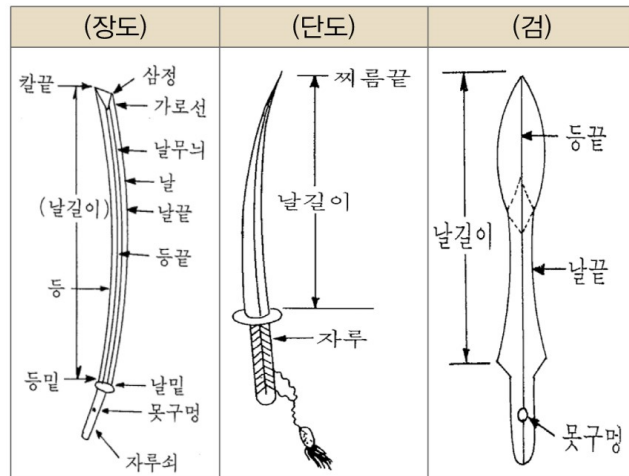
3. 도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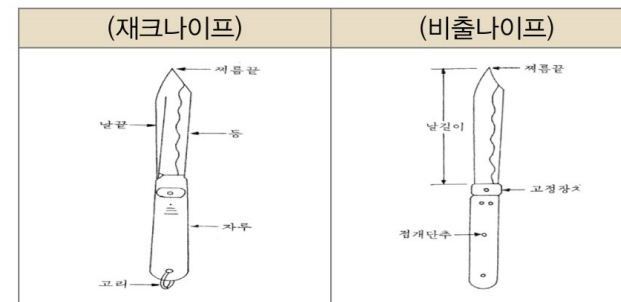
정의

-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·검·창·치도·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
- 칼날의 길이가 15cm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
-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
-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아니함

* 칼날의 길이 15cm이상의 도검류



* 칼날의 길이 15cm이하의 도검류



※ 재크나이프와 비출나이프의 구분

- (재크나이프) 접개식의 주머니칼로서 손잡이에 기다란 홈이 있고 칼날을 접어 넣게 되어 있음
- (비출나이프) 재크나이프와 유사하나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음

4. 기타 위해물품



	전자총격기 :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고압전류를 순간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기기
	석궁 : 총과 전통적인 활 모양을 조합한 형태의 활로서, 총처럼 방아쇠로 발사하는 기기
	화약류(폭발물) : 열, 충격 또는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급격한 반응을 일으켜 다량의 가스와 열을 방출하면서 분해 또는 재배열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
	분사기 :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
	뇌관 : 금속 탄환의 화약을 점화하는데 쓰는 발화용 폭발장치

위해물품 반입 · 수입 요건

- 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경찰청장 등의 허가 필요
- 허가기관
 - 총포 · 화약류 : 경찰청장
 - 도검 · 분사기 · 전자총격기 · 석궁 : 지방경찰청장

유의사항

해외직구 등으로 총기류와 총기 부품 및 그 밖의 위해물품을 경찰청장 등의 사전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되고, 「총포 · 도검 ·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정한 처벌*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주소지 관할 경찰청(서) 등 주무관서에 확인 바랍니다.

*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